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9.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25.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7명(김정희, 황국주, 이진환, 정창근, 고명욱, 강한곤)
- 발의일자: 2024. 9. 12.(목)
- 회부일자: 2024. 9. 12.(목)
- 검토기간: 2024. 9. 12.(목) ~ 9. 20.(금)

2. 제안이유

-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8조 및 제5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4. 9. 12. ~ 9. 23.)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대구광역시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우리구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과 이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공모사업의 방향·목표,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재정협의를·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 관련이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리구 2023년도 구비 1억원 이상 소요 공모사업 현황: 7건

구 분	디지털 정보과	경제 지원과	기후 환경과	체육 청소년과	도시 디자인과
건 수	2건	1건	2건	1건	1건
재 원	국·시·구비 기타	시·구비 기타	국·시·구비 기타	국·구비	시·구비

- 안 제6조에서는 구가 신청하는 구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구비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본 제정 조례안은 한정된 구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하여 신청부터 선정, 추진현황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